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2일 강태원 의원 외 6인(강태원, 연만흠, 박재국, 이필용, 김환동, 조영재, 이종호 의원)이 제안하여 7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가. 법제처는 법령 제명 붙여쓰기는 국민의 언어생활 현실과의 괴리 및 어문규범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2005.1.1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는 이를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나. 우리도의 경우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혼용되고 있어 도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법제처의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되 부서별로 추진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은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되,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사용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명을 별표와 같이 일괄하여 개정.

나.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자치법규 포함)의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조례 시행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하여 입법의 경제성·효율성 및 통일성을 확보함(부칙 제2항).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제명 붙여쓰기 관행은 일제강점시기에 일본법을 우리나라에 강제 적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본식 표기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법제처에서는 이를 어문규범에 맞게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도 조례 제명 또는 개정시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에 낫표 사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없이 법제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서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에는 이견이 없음.

붙임 1 조례제명 띄어쓰기 기준

2.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붙임 1>

조례제명 띄어쓰기 기준

1. 기본원칙

-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제88-1호, 1988.1.19)」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되,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구체적인 띄어쓰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조례제명 띄어쓰기 기준

- 가. 조례의 제명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현행 띄어쓰기에 관한 어문규범은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제88-1호, 1988.1.19)」이므로 이에 따라, 조례제명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에서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 나. 조사, 어미, 부사, 의존명사가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조례명의 경우, 통상 일반인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알려져 있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 다.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례명이라도 그 조례가 조직 또는 단체(공사, 조합, 위원회 등) 및 기금 등의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쓰도록 한다.
- 라. 조례명을 조례의 본칙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 조례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조례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한다.